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6년 11월 20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예산(안) 규모

○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

<표 1>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07 예산	2006 예산		증 감 (%)	
		당초예산	최종예산	당초대비	최종대비
합 계	220,907,542	185,243,097	223,653,917	35,664,445 (19.3)	-2,746,375 (-1.2)
일반회계	186,622,110	154,287,092	186,447,379	32,335,018 (21.0)	174,731 (0.1)
특별회계	34,285,432	30,956,005	37,206,538	3,329,427 (10.8)	-2,921,106 (-7.9)
의료급여	108,100	42,270	81,394	65,830 (155.7)	26,706 (32.8)
주 차 장	33,052,332	30,913,735	37,125,144	2,138,597 (6.9)	-4,072,812 (-11.0)
기반시설	1,125,000	0	0	1,125,000	1,125,000

2. 세입예산

○ 일반회계

<표 2>

(단위 : 천원, %)

재원별	2007 예산		2006 당초예산		증 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86,622,110	100	154,287,092	100	32,335,018	21.0
자 체 재 원	130,201,248	69.8	119,164,679	77.2	11,036,569	9.3
지 방 세	65,588,419	35.1	55,600,778	36.0	9,987,641	18.0
세외수입	64,612,829	34.6	63,563,901	41.2	1,048,928	1.7
의 존 재 원	56,420,862	30.2	35,122,413	22.8	21,298,449	60.6
조정교부금	32,389,816	17.4	10,183,443	6.6	22,206,373	218.1
재정보전금	997,452	0.5	1,024,800	0.7	-27,348	-2.7
보 조 금	23,033,594	12.3	23,914,170	15.5	-880,576	-3.7
국고보조금	11,208,619	6.0	11,557,766	7.5	-349,147	-3.0
시비보조금	11,824,975	6.3	12,356,404	8.0	-531,429	-4.3

※ 재정자립도 69.7%(전년도 77.2%)

○ 특별회계

<표 3>

(단위 : 천원, %)

재원별	2007 예산		2006 당초예산		증 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4,285,432	100	30,956,005	100	3,329,427	10.8
의료급여	108,100	0.3	42,270	0.1	65,830	155.7
자체수입	2,100	0.0	5,100	0.0	-3,000	-58.8
시비보조금	106,000	0.3	37,170	0.1	68,830	185.2
주 차 장	33,052,332	96.4	30,913,735	99.9	2,138,597	6.9
자체수입	33,002,832	96.3	30,556,735	98.7	2,446,097	8.0
시비보조금	49,500	0.1	357,000	1.2	-307,500	-86.1
기반시설	1,125,000	3.3	0	0.0	1,125,000	0.0
자체수입	1,125,000	3.3	0	0.0	1,125,000	0.0
시비보조금	0	0.0	0	0.0	0	0.0

3. 세출예산

○ 일반회계

<표 4>

(단위 : 천원, %)

재 원 별		2007 예산		2006 당초예산		증 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86,622,110	100	154,287,092	100	32,335,018	21.0
경 상 예 산	소 계	108,849,913	58.3	95,626,934	62.0	13,222,979	13.8
	인 건 비	71,827,752	38.5	66,258,444	42.9	5,569,308	8.4
	경상적경비	37,022,161	19.8	29,368,490	19.0	7,653,671	26.1
사 업 예 산	소 계	67,066,717	35.9	55,289,632	35.8	11,777,085	21.3
	보조사업	31,374,443	16.8	32,342,935	21.0	-968,492	-3.0
	자체사업	35,692,274	19.1	22,946,697	14.9	12,745,577	55.5
채 무 상 환		150,000	0.1	135,000	0.1	15,000	11.1
예 비 비 동		10,555,480	5.7	3,235,526	2.1	7,319,954	226.2
	예 비 비	2,500,000	1.3	2,254,532	1.5	245,468	10.9
	기 타	8,055,480	4.3	980,994	0.6	7,074,486	721.2

○ 특별회계 (총괄)

<표 5>

(단위 : 천원, %)

재 원 별		2007 예산		2006 당초예산		증 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4,285,432	100	30,956,055	100	3,329,427	10.8
경 상 예 산	소 계	4,557,807	13.3	5,419,168	17.5	-861,361	-15.9
	인 건 비	2,391,601	7.0	3,305,399	10.7	-913,798	-27.6
	경상적경비	2,166,206	6.3	2,113,769	6.8	52,437	2.5
사 업 예 산	소 계	18,570,480	54.2	11,545,615	37.3	7,024,865	60.8
	보조사업	182,258	0.5	753,270	2.4	-571,012	-75.8
	자체사업	18,388,222	53.6	10,792,345	34.9	7,595,877	70.4
기 타		11,157,145	32.5	13,991,222	45.2	-2,834,077	-20.3

○ 주차장

<표 6>

(단위 : 천원, %)

재 원 별		2007 예산		2006 당초예산		증 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3,052,332	100	30,913,735	100	2,138,597	6.9
경 상 예 산	소 계	4,525,110	13.7	5,419,168	17.5	-894,058	-16.5
	인 건 비	2,366,759	7.2	3,305,399	10.7	-938,640	-28.4
	경상적경비	2,158,351	6.5	2,113,769	6.8	44,582	2.1
사 업 예 산	소 계	18,487,222	55.9	11,506,345	37.2	6,980,877	60.7
	보조사업	99,000	0.3	714,000	2.3	-615,000	-86.1
	자체사업	18,388,222	55.6	10,792,345	34.9	7,595,877	70.4
기 타		10,040,000	30.4	13,988,222	45.2	-3,948,222	-28.2

○ 기반시설

<표 7>

(단위 : 천원, %)

재 원 별		2007 예산		2006 당초예산		증 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25,000	100	0	0.0	1,125,000	0.0
경 상 예 산	소 계	7,855	0.7	0	0.0	7,855	0.0
	인 건 비	0	0.0	0	0.0	0	0.0
	경상적경비	7,855	0.7	0	0.0	7,855	0.0
사 업 예 산	소 계	0	0.0	0	0.0	0	0.0
	보조사업	0	0.0	0	0.0	0	0.0
	자체사업	0	0.0	0	0.0	0	0.0
기 타		1,117,145	99.3	0	0.0	1,117,145	0.0

4.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

<표 8>

(단위 : 천원)

위 원 회 명	2007 예산액	2006 예산액	증 감	구성비 (%)
합 계	186,622,110	154,287,092	32,335,018	100
운영위원회	14,000	0	14,000	0.1
시민행정위원회	67,314,685	44,129,727	23,184,958	36.0
재무건설위원회	119,293,425	110,157,365	9,136,060	63.9

5.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표 9>

(단위 : 천원)

위 원 회 명	2007 예산액	2006 예산액	증 감	구성비(%)
합 계	186,622,110	154,287,092	32,335,018	100
운영위원회	2,312,512	2,124,538	187,974	1.3
시민행정위원회	165,185,091	138,811,472	26,373,619	88.5
재무건설위원회	19,124,507	13,351,082	5,773,425	10.2

6. 검토의견

○ 총괄

2007년도 우리구 총예산(안) 규모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209억 754만 2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19.3%인 356억 6,444만 5천원이 증가된 규모인 바,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866억 2,211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1.8%인 323억 3,501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주차장,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합하여 342억 8,534만 2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10.8%인 33억 2,942만 7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 : 쪽 35~66

- 일반회계 세입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66억 2,11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323억 3,501만 8천원이 증가 편성되었는 바, 이를 세목별로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99억 8,764만 1천원과 세외수입 10억 4,892만 8천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222억 637만 3천원이 큰 폭으로 증가(218.1%)된 반면, 재정보전금 -27,348천원과 국고보조금 -3억 4,914만 7천원, 시비보조금 -5억 3,142만 9천원이 각각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7.5% 감소된 69.7%가 되겠습니다.
-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92억 9,342만 5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8.2%인 91억 3,606만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의 63.9%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과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과별 세입예산 증감요인 】

○ 세무1과 : 쪽 35, 47

구세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 91억 6,635만원이 증가된 것은 건축물 재산세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면적증가 인상을 1%외에 건축건물기준가액(2%) 및 적용율 인상(5%) 등 과세표준액 인상요인과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일정비율의 세액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무려 22.9% 증가된 것이 주요인이 되는 것이며, 시세징수교부금수입 3억 7,481만 5천원이 증가된 것은 시세징수금의 3%를 업무처리비용으로 교부되는 것으로서 최근 3년간 평균신장율(5.0%)을 감안하여 추계된 것으로 봅니다.

○ 세무2과 : 쪽 35

사업소세는 사업장의 연면적 및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신고납부되는 구세로서 전년 대비 6억 9,326만 8천원이 증가된 것은 종업원 급여 상승 및 연면적 330㎡ 초과 신축 건축물 증가로 세입목표를 4% 증가로 추계되었고, 또한 면허세 73,426천원이 증가된 것은 국세청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가 2006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매년 신규면허의 신장율 3% 정도 증가될 것으로 감안하여 추계된 것입니다.

○ 재무과 : 쪽 36, 47, 48

공유재산임대수입 75,623천원이 증가된 것은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대상자의 대부계약 전환으로 수입 증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07. 1. 1부터 국·공유재산의 임대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10%) 납부분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요인이 전망되어 추계된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매각수입 15억원이 감소된 것은 구 서부여성문화센터(청운동 89-12, 89-96) 매각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감소 계상된 것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원 증가된 것은 2006년도 세입전망이 약 22억원이 예상되나 2007년도의 지속적인 저금리 요인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감안하여 소폭으로 증가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13억 5,220만원이 전년 대비 감소된 것은 종합부동산 환급금이 152억원에서 70억원으로 감소 예측과 기타 집행잔액 및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감안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 **건설관리과 : 쪽 38, 47**

도로사용료 4억 6,846만 6천원이 증가된 것은 무단점용 공공용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전년도 세입징수 전망치(31억 1,600만원) 기준과 개별공시지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된 것이며, 도로사용 징수교부금 2억 3,023만 1천원이 증가된 것은 서울시 수입 도로·하천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서 징수액의 50%를 시에서 교부될 것으로 추계되어 반영된 것입니다.

○ **공원녹지과 : 쪽 40, 51**

공원점용료 12,665천원이 증가된 것은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옹벽앵커설치)이 추가되었고, 개별공시지가 상승요인이 있어 추계된 것이며, 또한 가로수 변상금 43,000천원이 증가된 것은 각종 도로정비 행위(재건축, 재개발 등 건축행위)에 따른 가로수 이식 증가 예상으로 추계된 것입니다.

○ **지적과 : 쪽 42, 48**

인증기 수입 29,494천원이 증가된 것은 토지대장등본외 5종 민원 제 증명 수수료가 향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개발 활성화로 지적 관련 증명발급 증가가 예상되고, 전년도 세입 전망치(18억 8,777천원)를 기준으로 추계되었고, 개발이익부담금 15,000천원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 추계된 것은 평창동 495-19 등 개발사업의 준공 예상과 각종 개발사업(토지형질변경 등)의 완료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일정비율(50%) 교부가 예상되어 반영된 것입니다.

○ **산업환경과 : 쪽 47, 49**

환경개선부담 징수교부금 1억 4,113만 8천원이 증가된 것은 2006년도 세입목표를 감안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29억 4천만원에 대한 징수를 증가가 예상되어 추계된 것이며, 또한 정밀검사와태료 36,100천원이 증가된 것은 2005년 결산액 56,440천원과 2006년 세입예산액 83,000천원의 평균치를 감안하여 추계된 것입니다.

○ **도시계획과 : 쪽 50**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 26,117천원이 증가된 것은 2006년 세입 전망치 56,117천원을 감안하였고, 불법광고물 물량 증가를 감안하여 추계된 것입니다.

○ **주택과 : 쪽 50**

건축이행강제금 과태료 50,000천원이 증가된 것은 종전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2006. 5. 9일부터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구수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증가가 예상되고, 또한 개별공시지가 상승요인으로 증가 추계된 것입니다.

○ **건축과 : 쪽 50**

건축이행강제금 과태료 29,750천원이 증가된 것은 종전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2006. 5. 9일부터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구수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증가가 예상되고, 또한 개별공시지가 상승요인으로 증가 추계된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 : 쪽 47, 51**

교통유발징수교부금 3억 8,719만 9천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2006년도에 교부금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예상이 곤란하여 미반영된 것이며, 교통유발징수금의 10% 교부시 세입부서에서 세입처리 되었고, 2007년도에 반영된 것은 전년도 교부되는 금액을 감안하였으며, 2007년도 건물 신축 (1,000㎡ 이상 업무용 빌딩) 등에 따른 부과대상

증가가 예상되어 추계된 것입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3억 이 증가된 것은 2007년도 무인카메라 설치로 야간단속 및 동절기 단속 가능에 따른 부과대상 증가로 추계된 것입니다.

※ 별첨 2007년도各科별 세입예산편성 현황 : 쪽 ~

○ 일반회계 세출예산

○ 총괄

일반회계 세출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66억 2,211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1.0%인 323억 3,501만 8천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를 세세항별로 보면 ①경상예산은 1,088억 4,991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13.8%인 132억 2,297만 9천원이 증가 편성되어 일반예산의 58.3%(인건비 38.5%, 경상적경비 1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②사업예산은 670억 6,671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21.3%인 117억 7,708만 5천원이 증가 편성되어 일반예산의 35.9%(보조사업 16.8%, 자체사업 19.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③채무상환은 1억 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1.1%인 15,000천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등은 105억 5,548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26.2%인 73억 1,995만 4천원이 증가 편성된 것입니다.

-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91억 2,450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42.2%인 57억 7,342만 5천원이 증가 편성되어 세출예산의 10.2%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과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과별 세출예산 증감요인 】

○ 재무과 : 쪽 425 ~ 434

재무과의 세출예산은 4억 1,614만 3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37.6%인 1억 1,360만 7천원이 증가 편성되었는 바, 증가요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공유재산임대료 및 변상금의 10% 국고 납부분 77,946천원과 복식부기회계시스템 유비보수비 13,200천원이 신규로 반영되어 증가된 것입니다.

○ 산업환경과 : 쪽 442 ~ 448, 438 ~ 487

산업환경과의 세출예산은 9억 5,873만 4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33.1% 감소 편성되었으며, 감소요인은 2006. 7. 1일 직제개편에 따라 위생관련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며, 주요 사업비 편성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종로환경센터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22,000천원이 신규로 반영된 것은 구 홈페이지에 환경정보 공개 및 환경배출업소 관리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영된 것이며, ② 민간행사보조로 홍제천 청소년 축제 20,000천원과 백사실 자연생태 체험교실 운영 10,000천원이 신규로 반영된 것은 홍제천의 환경보전 확산을 위한 일환으로 전년도 청소년 사생대회 집행예산 시비 10,000천원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이나, 행사성 경비 적정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③ 홍제천 복원사업 시설비 3억원이 편성된 것은 시비지원 명목을 위해 구비 일부분을 반영한 것이고, 자동차배출가스 비디오카메라 및 판독기 물품취득비로 45,000천원이 반영된 것은 현재 사용중인 비디오카메라 내구연수가 경과(15년) 되어 대체 취득하는 것이며, ④ 민간행사보조로 종로 귀금속축제 행사지원비 20,000천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은 귀금속·보석산업 집적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사비 일부가 반영된 것입니다.

○ 세무1과 : 쪽 434 ~ 438

세무1과의 세출예산은 5억 5,523만 4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14.0%인 68,084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주택가격조사시스템(PDA) 2대 물품취득비 10,000천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그에 따른 각종서식 등 인쇄비와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6,580천원이 증가 계상된 것입니다.

○ 세무2과 : 쪽 438 ~ 441

세무2과의 세출예산은 4억 5,837만 5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18.6%인 72,019천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증가요인은 일반운영비 8,045천원과 각 부서 공통사항인 기본업무추진여비 증가 반영분 65,040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 지적과 : 쪽 476 ~ 482

지적과의 세출예산은 4억 1,288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30.0%인 95,219천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증가요인은 부동산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이용 위반자 신고포상금 및 무등록중개행위자 등 신고포상금 반영분 10,000천원과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및 전국 온라인 전산발급체계를 위해 구 토지대장(임야) 전산화 구축 용역비 89,162천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 주택과 : 쪽 462 ~ 467

주택과의 세출예산은 3억 8,040만 1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1.1%인 -4,324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일반운영비 29,805천원 등 일부 비목에서 감소된 반면, 공동주택관리지원비 40,000천원이 반영된 것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비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 신규로 편성된 것이며, 기존무허가건물 측량비 20,000천원이 신규로 반영되는 등 일반운영비 비목에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 도시계획과 : 쪽 470 ~ 474

도시계획과의 세출예산은 5억 6,724만 4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11.3%인 -72,012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연구개발비 -90,000천원과 자산취득비 -24,428천원이 각각 감소된 반면, 울곡로 지구단위계획 제2차 재정비 용역비 3억원과 옥외광고물 정비 철거용역비 50,000천원이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 건축과 : 쪽 467 ~ 470

건축과의 세출예산은 1억 7,044만 5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3.1%인 5,157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증가요인은 2,000㎡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제3의 건축사 사용승인에 대한 특별검사원 검사수당 11,500천원 증가 등 일부 비목에서 증가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 공원녹지과 : 쪽 452 ~ 462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은 28억 6,030만원 7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무려 86.4%인 13억 2,568만 6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증가요인은 공원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4억 2,200만원, 녹지관리에 소요되는 시설비 4억 9천만원 등 일부 비목에서 각각 증가되어 반영된 것이며, 주요 사업비 편성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송인근린공원보수비 1억 5천만원이 신규로 반영된 것은 공원내 노후 및 훼손된 각종 시설물(파고라 및 의자 교체, 야외운동시설 설치, 관목식재 등)을 보수·교체하기 위해 편성된 것이며, ② 북악산길 산책로 정비 1억원이 편성된 것은 2005년도 사고이월액 9억 5천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일부 부족한 야외운동시설, 육각정자 등 편의시설을 확충·보완하고, 관목류 식재에 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된 것이고, ③ 위험절개지 정비사업비 5억원이 반영된 것은 낙석으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창산동 23-813번지 절개지를 보강하는 사업비로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지방재정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편

성 이전에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업은 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④ 북악팔각정 지상 주차장보수 84,000천원, ⑤ 구공원 유지보수 사업비 3억원, ⑥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사업 1억원, ⑦ 주택가 임야 및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사업 1억원, ⑧ 위험절개지 정비사업비 5억원, ⑨ 사계절 가로녹화 90,000천원, ⑩ 구청사 및 가로변녹지대 등 꽃묘구입 1억원이 각각 반영되어 증가된 것입니다.

○ 뉴타운사업추진단 : 쪽 474 ~ 476

뉴타운사업추진단의 세출예산은 94,661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91.0%인 -9억 5,622만 5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사업지구 미지정으로 창신·송인뉴타운개발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10억원이 명시이월되어 감소 편성된 것입니다.

○ 건설관리과 : 쪽 490 ~ 497

건설관리과의 세출예산은 11억 5,508만 6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41.5%인 3억 3,858만 9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증가요인은 미불보상 신청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도로미불보상금 3억원 등 일부비목에서 증가되어 반영된 것입니다.

○ 토목과 : 쪽 448 ~ 452, 487 ~ 489, 497 ~ 508

토목과의 세출예산은 91억 7,098만 8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무려 106.3%인 47억 2,522만 9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상하수 비목에서 10억 69,000천원, 도로건설 비목(도로건설, 도로관리 및 도로조명 사업비)에서 34억 6,757만 8천원이 각각 증가 반영된 것이며, 주요 사업비 편성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8억원, ②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8억

원, ③ 빗물받이 준설 및 역지변 설치공사 2억원, ④ 감사원장 공관 ~ 평창동 354간 외 2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3억 5천만원, ⑤ 관수동 16 ~ 장사동 14-1간의 2 도로개설공사 5억원, ⑥ 익선동 5 ~ 34-8 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⑦ 부암동 조석고개 도로개설공사 8억원, ⑧ 통의동 35 ~ 53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⑨ 관내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6억원, ⑩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4억원, ⑪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3억원, ⑫ 종로귀금속거리 도로정비공사 8억원, ⑬ 관내 가로 등 유지 및 보수공사 3억원, ⑭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4억원 이 각각 반영된 것입니다.

※ 한편, 쪽 498 복사기 토너카트리지 Di3010 용 1대×3개 = 225천원 이 편성된 것은 중복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 쪽 519 ~ 528

재난안전관리과의 세출예산은 6억 9,238만 6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1.3%인 8,955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재난안전기동대 (전문기능)요원 일용직 1명 사역에 따른 인건비 13,055천원과 침수 주택 재난지원금 10,000천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4,148만원 이 반영된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 : 쪽 508 ~ 518

교통행정과의 세출예산은 12억 3,160만 3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75.0%인 5억 2,783만 6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증가요인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 4억 6,041만 6천원과 전용차로 단속용 무인 카메라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물품취득비 2억 4,065만원이 증가되어 반영된 것이며, 주요사업비 편성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미끄럼방지포장 신설 및 재포장(유지보수) 시설비 2억 1,980만원 이 반영된 것은 도로상태가 불량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는 것이며, ②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용 무인카

매라 설치에 따른 물품취득비 2억 4천만원이 반영된 것은 단속인력 미보충으로 인하여 단속체계 개편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 별첨 2007년도 각 과별 세출예산편성 현황 : 쪽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요인 】

○ 주차장 특별회계 : 쪽 531 ~ 550

-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30억 5,233만 2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6.9%인 21억 3,859만 7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을 보면, 주차요금수입이 증가된 것은 전인보관소 준공으로 전인구획이 종전 6면에서 27면으로 확대되었고 전인건수 증가로 수입 증대가 각각 예상되어 전인료 수입 7억 9,200만원과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 34억 7,556만원이 증가 추계된 것이며,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이 증가 계상된 것은 지출규모가 큰 부지매입이 신규로 발생되지 않아 잉여금이 다소 증가 예상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5억 8,200만원과 지난년도 과태료수입 6억 4,068만원이 증가 계상된 것은 CCTV 전자동시스템 도입으로 단속건수 증가가 예상되고,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으로 징수율이 제고(12 → 15%)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대행사업비 10억 3,366만 8천원이 반영된 것은 공영주차장(노외, 노상),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소요경비를 지급하는 것이며, 주차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4억 8,300

만원이 반영된 것은 주차금지선 설치와 노상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를 전년도 수준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105억원, 공영주차장 건립비 50억원과 주정차 단속시스템 신규 설치 및 이전에 필요한 4억원이 각각 증가되어 반영된 것이며, 또한 공영주차장건립 적립금은 99억 9천만원이 계상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 기반시설 특별회계 : 쪽 553 ~ 554

-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1억 2,5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는 바, 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3,855천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천원, 도시기반시설 대체 및 개량비에 소요되는 적립금으로 11억 1,714만 5천원으로 편성된 것이며, 이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교부금으로서 광역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징수금(70%)의 30%를 당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교부금은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비용 및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위한 사업비 등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적립금은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